

기안용지

분류기호	인사 201	(전화번호)	()	전결규정	조	호
문서번호	2051			전결사항		
처리기한		기안자	결	제	자	
시행일자	68. 5. 15	인사과 이광우	내무국장			
보존년한		기안일자	결	일	자	
		68. 5.				
보 조 기 관	인사과장					
	보임제장	회				
협 조						
경 수 참 조	유 신 조	주신처 참조	제	발 송	정 서	과 대 장 정 리
제 목	4급 이하 공무원의 구간 전보권 위임.					
<p>인사상의 간소화와 인사배치의 효율을 도모하 기 위하여 증정된 규칙 제458호의 위임사항 중 별첨 제 1항의 과 같이 그 일부를 해제하니 시행에 착수 하도 록 한 것.</p>						
<p>첨부 위임배용대부지침 등</p>						

수신처: 대령 1-9

(제2안)

수신 행정외장

발신 인사외장

제목 등 건

1. 행정 - (68.)의 관련요.

2. 당과 소관 위임 사무의 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은 별첨과 같이 생략되기 통보 합니다.

첨부: 別紙 林記 添付

委任細部指針

1. 委任機關

各區所長

2. 委任範圍

區內所屬區長之係長是除外此 4級甲等以下
國家及地方公務員之區所間轉補。

3. 施行方法

가. 轉補命令은 現所屬區所長의 同意를 得은
後 轉入하는 區所에나 行한다.

나. 轉補命令을 行한 機關은 命令即日 別紙書式
에 의해서 報告하여야 한다.

다. 다음 각 항의 /에 該当하는 경우는 轉出, 轉入의
要求는 同意를 行한다.

(1) 令條에 맞지 않는 境遇 轉出, 轉入의 要求

(2) 公務員 任用令의 轉補制限에 規定에 該當
하는 者.

(3) 相互交流에 關하여 雙方 轉出入 對象者의 職

級差が 相異なる 경우

~~(3) 上级職員の 係長補任 及び 職
薪成理 規定 者~~

(4) 懲戒要件 中に 者 또는 懲戒 相当의 非違
事實이 있는 者

✓ (5) 上位職級差의 缺員을 補充하기 爲하
下位職級差의 轉入同意 要件이 取消
된다.

(6) 其他 客觀的으로 公正한 人事管理의 違背의
사실이 認定되는 경우

다. 前 各 項 各 号의 規定의 違背인 特補規定之
規定이 取消된다.

다. 報告書의 轉入事由는 具體的으로 記載하여야
한다.

X 但 一般的인 調整을 行할 必要가 있을 때
緊急의 要項에 對하여 長이 特補를 行한다

(報告書式)

기 관 명

분류기호

1968.

수신 시 장

참조 인사과장

제목 전보발령 보고

1.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하였기 보고합니다.

2. 발령사항

(전 소 속)

(직 급)

(성 명)

○○○ 전임을 명함

○○○ 과 근무를 명함

1968.

○○○ 구 청 장

3. 전임사유

예)

1. 담당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소위

2. " " " " 학력소위

3. 특수출연 교육 이수

4. 인화도형

5. ~~특수출연~~ 교육 이수

주최자 함장

○○○ 구 청 장

(委任内譯)

内 容	中止以系委任事項	中止を解除する事項	繼續中止する事項
<p>(1) 委任範圍</p>	<p>1. 区に所属する 4級以下公務員の 区間転補権を 区庁長に付 委任。</p> <p>2. 5級以上技能職公務員の 任用権を 区庁長に付 委任。</p> <p>3. 事業所に 所属する 5級公務員の 区間転補権を 3級以上以上の 事業部長に付 委任。</p>	<p>4級甲类以下公務員の 区間転補権 (現に所属する公務員に限る) (補職者 除外)</p> <p>委任。</p>	<p>① 4級甲类 委任 補職 除 外</p> <p>② 繼續 中止</p>
<p>(2) 受 任</p>		<p>区 庁 長</p>	

(委任経緯)

1. 64. 7. 23 例規第15号

区、事科長向 5級公務員の 轉出入権を
区長、32以上事科長에게 委任.

2. 65. 3. 10. 規則第48号

"地方公務員任用權 委任規則中改正.

- 1). 区長에게 4級以下 区内 轉補權 委任.
- 2). 事科長(3級以上)에게 5級の 事科長
轉補權 委任.

3. 66. 5. 5 "人事運営指示.

委任及 轉補權 運営 中止.

보 건 사 회 부

보험계	보험계장	인사과장
	1348	

1348
1968. 6. 11

지 의 1425
수 신 나 1-11
제 목 의무직 및 보건직 공무원 임명 및 결원 보건소장 총원에 관하여

1968. 6. 11

1. 현재 귀시, 도 관하 보건소에 대하여

가. 장기간 보건소장 결원 지역이 빈번히 생기고 있음에 따라

나. 관하주민들의 의포해택을 받지 못함과 동시 보건행정

의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

다. 앞으로는 귀시, 도에서 관하 보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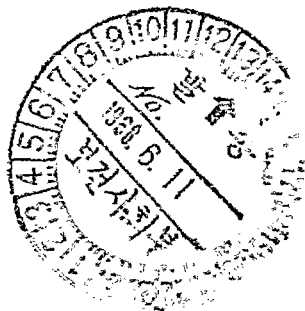
철저히 함것이며 더부러 결원지역 보건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함과 동시

조속한 시일내에 총원토록 조치함것이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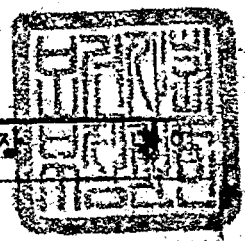
2. 시, 도 의약과장 및 보건과장 임명시에도 의사 자격을 소지한자

중에서 임명토록 조치하기 바람.

김



2



보

사 례 별 시 회	보 건 사 회 부	장
1968 6 11	시	수 명 처
104-1710	장 전 결	초 기 한
제 조	장 전 결	지 시
보 건 사 회 부	장 전 결	총 원

X104

내 무 부

해정 201 - 7900

수신 서울특별시청

제목 공무원 전직시험에 관한 질의

계	보임계장	인사과장	내무국장	제부상장	시	본건
						본건
						본건

1. 서울신문사 201 - 3621 (68. 5. 17.) 와 관련됨.

2. 정실병경으로 입학역 약무직이 보건연구직으로 직급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보건연구직 해당분야인 약학분야로 전직하는 경우에 시험없이 전직임용할수 있으나 보건연구직의 해당분야를 달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직시험을 필한후 전직임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보됨. 끝

5.24 10

3915

조항

사항

인

